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복 착용 권장〉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61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안)	1
II . 검토의견	3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병주 · 박선원 · 윤종균 · 소병훈 · 한민수 · 한창민
· 허영 · 이성윤 · 윤후덕 · 전현희 · 박홍근 · 조계원
· 서미화 · 김태선 의원(14인)

나. 발 의 일 : 2025. 9. 15.

다. 회 부 일 : 2025. 9. 16.

※ 의안번호 : 1296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

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 및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한복 착용) ① 대한민국 <u>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u> <u>국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u> <u>여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u> <u>을 권장한다.</u>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u>에 한복을 착용하도록 노력하</u> <u>여야 한다.</u> 1. <u>정기회 개회식</u> 2. <u>제헌절 경축식</u> 3. <u>그 밖에 국회에서 기념할 의</u> <u>미가 있는 날로서 의장이 정</u> <u>하는 날</u>

현행 「국회법」 제25조에서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복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개정안은 ① 한복의 사회적 위상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시키고, ②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③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서 통합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① 특정 복장의 착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 및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¹⁾, ②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복장 선택의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14

1)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676)이 발의되어 국회운영 위원회에 계류 중임.